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별 정 직 공 무 원 인 사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공무원법 개정안('20.1.29공포, '20.7.30시행) 중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준용하는 동시에 별정직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 절차 신설 등 그간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퇴직 희망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 준용(안 제9조)

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」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('20.1.29공포, '20.7.30시행)으로 상향입법되어 법 제78조의4와 병합됨에 따라 해당 개정조항을 별정직공무원에도 준용하도록 함

나. 징계 외 사유로 인한 면직 시에도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등 적용(안 제9조, 안 제10조)

- 1) 현행 규정은 징계 사유에 따른 면직의 경우에만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청취,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절차를 적용하고 있고, 그 외 사유에 따른 면직의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

- 2)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청취 및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절차를 현행 징계 사유로 인한 면직 외에 모든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, 현행 예규에 규정된 사전통지, 의견제출 절차를 법령에 상향규정함

다. 별정직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 절차 마련(안 제3조의4, 안 제6조)

- 1) 현행 규정 상 비서·비서관, 정책보좌관 외의 별정직공무원은 직위 변경 필요 시 재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괄적으로 근무상한연령을 적용받고 있는 등 탄력적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음
- 2) 동일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에서 직무분야가 동일·유사한 다른 직위에 임용하고자 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공고·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, 직위 특성 상 필요 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3. 6. ~ 4. 15.) 예정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

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제1항제2호 중 “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(移替)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”을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(移替)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임용하는 경우
- 나.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

제6조제2항 중 “별정직공무원 중 비서, 비서관(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을 포함한다) 및 정책보좌관”을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비서, 비서관(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을 포함한다) 및 정책보좌관
2. 제1호와 담당 직무 및 직위가 유사하거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

등 사유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도록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

제7조의4의 제목 “(시간제근무)”를 “(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간제근무공무원”을 “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(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시간제근무공무원”을 각각 “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징계 등)”을 “(면직 및 징계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부과처분”을 “부과처분(이하 “징계처분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라”를 “제1항 및 그 밖의 사유로”로, “면직심사위원회”를 “면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“한다.”를 “하고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면직심사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”을 “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”으로, “제79조부터 제83조까지(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)”를 “제78조의4(제3항은 제외한다),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(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징계처분 또는 징계

부가금 부과처분”을 “징계처분등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호 중 “제9조제1항”을 “제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4제1항제2호,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신 설>

<신 설>

3. 삭 제

4. 5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6조(근무상한연령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공무원 중 비서, 비서관(「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을 포함한다) 및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가.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(移替)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임용하는 경우

나.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

4.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근무상한연령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

--.

1. 비서, 비서관(「전직대통령

<신 설>

③ (생 략)

제7조의4(시간제근무) ① 임용권
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
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「국가
공무원법」 제26조의2에 따라
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
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
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「국
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9조에
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
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
장관이 정한다.

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
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

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
항에 따른 비서관을 포함한
다) 및 정책보좌관

2. 제1호와 담당 직무 및 직위가
유사하거나 근무기간이 정해
져 있는 등 사유로 임용권자
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
한연령을 두지 않도록 인사혁
신처장과 협의한 경우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4(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
등) ① -----

-----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
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
(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)-----.

② ----- 시간선
택제전환공무원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 시간선택제전

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「공무원임용령」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
제9조(징계 등)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.
<후단 신설>

환공무원-----

-----.

④ -----
-----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-----
-----.

제9조(면직 및 징계 등) ① -----

---- 부과처분(이하 “징계처분 등”이라 한다)-----.

② 제1항 및 그 밖의 사유로 -----
----- 면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 하고
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, 제78조의2, 제78조의3,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(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)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3 및 제83조의2 제3항의 “소청심사위원회”는 “행정심판위원회”로, “결정”은 “재결”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「공무원 징계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)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

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----- 위원회-----

-----.

④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-----

----- 제78조의4
(제3항은 제외한다),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(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)-----
-----.

⑤ ----- 징계처분등-----

-----.

제10조(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)

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<u>제9조제1항</u>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	----- 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9조제2항</u>----- -----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319